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인에 대한 검토보고

□ 개정이유

-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지방세 감면 사항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과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 및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지원하고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여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납세부담을 완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향교재산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한 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과세하며,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1,000분의 3으로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정함. (안 제10조의2제1항, 제2항 신설)
- 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종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 공동주택으로 축소하여 도세감면 조례상의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감면규모 일치로 형평을 도모함. (안 제12조제1항제2호, 제3호)

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시한을 5년으로 정하여 타 감면 사항과 형평을 기함. (안 제12조의2)

라. 사권제한 토지에 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종전보다 확대 규정함. (안 제18조)

마.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함. (안 제24조의3 신설)

바. 농업기반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함. (안 제24조의4 신설)

□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감면사항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과,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 및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법령적합성이나 내용타당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